

● 제291회(폐회중)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3.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372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0. 3. 19.
- 다. 회부일 : 2020. 3. 20.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1)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6,462억으로 당초보다 1,718억(11.7%)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조 10억 9천 6백만원에서 1,718억 1천9백만원 증가(17.2%)한 1조 1,729억 1천 5백만원임.

〈여성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420,547	1,646,167	1,474,348	171,819(11.7)
일반회계	1,410,630	1,632,250	1,460,431	171,819(11.8)
세외수입	경상적	606	667	-
	임시적	56,579	68,834	-
지방교부세	400	-	-	-
국고보조금 등	999,261	1,172,915	1,001,096	171,819(17.2)
지방채	-	23,500	23,5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184	366,334	366,334	-
균형발전특별회계	9,917	13,917	13,917	-
국고보조금 등	9,917	13,917	13,917	-

(2)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조 9,056억 3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982억 2천 3백만원(4.2%)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3조 1,412억 6천만원에서 1,982억 2천3백만원 증가(6.3%)한 3조 3,394억 8천 3백만원임.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232,108	4,905,603	4,707,380	198,223(4.2)
일반회계	2,780,251	3,405,384	3,207,161	198,223(6.2)
세외수입	경상적	13,851	14,005	-
	임시적	39,635	40,433	-
지방교부세	432	170	170	-
국고보조금 등	2,713,016	3,339,483	3,141,260	198,223(6.3)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13,318	11,293	11,29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7	1,500,219	1,500,219	-
세외수입	임시적	2,621	2,905	-
	국고보조금 등	678,572	752,308	-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770,664	745,006	745,006	-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984억 7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4억 6천 7백만원(1.3%)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280억 4천 1백만원에서 24억 6천 7백만원 증가(1.9%)한 1,305억 8백만원임.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90,340	198,407	195,940	2,467(1.3)	
세외	경상적	40,795	40,791	40,791	0(0.0)
수입	임시적	20,831	25,111	25,111	0(0.0)
지방교부세	-	1,040	1,040	0(0.0)	
국고보조금 등	127,928	130,508	128,041	2,467(1.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6	957	957	0(0.0)	

나. 세출예산

(1)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915백억 5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95억 1천 7백만원 (6.2%)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761,960	3,091,554	2,912,038	179,517(6.2)
행정운영경비	741	763	763	-
재무활동	5,056	13,492	13,492	-
사업비	2,756,163	3,077,299	2,897,783	179,517(6.2)

(2)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조 1,370억 7천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319억 2천 4백만원 (5.6%)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7,020,115	8,137,075	7,705,151	431,924(5.6)
행정운영경비	752	697	697	-
재무활동	768,910	945,211	745,211	200,000(26.8)
사업비	6,250,453	7,191,167	6,959,243	231,924(4.3)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970억 4천 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6천 7백만원(0.5%) 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87,022	497,048	494,580	2,468(0.5)
행정운영경비	8,063	7,977	7,977	0(0)
재무활동	599	435	435	0(0)
사업비	478,360	488,635	486,168	2,467(0.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특별시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1일 WHO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을 선포한 이후 금융시장의 폭락, 실물경제의 위축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민생안정지원 및 피해업체지원, 시민안전강화라는 3대 분야 중점 지원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음.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중보건상의 위기인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전체 16개 사업 6,110억 3천 8백만원이 제출되었음.
-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및 휴교를 한 바 높아진 시민의 양육부담을 감소하고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대한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5억 6천 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위하여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한 7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제출하였음.
- 복지정책실의 경우 재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생활자금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의 전출금 2,000억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246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이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제출하였음. 이와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위한 예산 1,712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집행부는 밝히고 있음.

- 이 외에 시민건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음압구급차 구매를 위한 예산 국비 24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됨.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역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비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여성가족정책실

1) 세입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조 6,461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한 1,1718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름. 국고보조금의 경우 1조 10억 9천 6백만원에서 1조 1,729억 1천 5백만원으로 17.2% 증가하였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420,547	1,646,167	1,474,348	171,819(11.7)
일반회계	1,410,630	1,632,250	1,460,431	171,819(11.8)
세외수입	경상적	606	667	-
	임시적	56,579	68,834	-
지방교부세	400	-	-	-
국고보조금 등	999,261	1,172,915	1,001,096	171,819(17.2)
지방채	-	23,500	23,5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184	366,334	366,334	-
균형발전특별회계	9,917	13,917	13,917	-
국고보조금 등	9,917	13,917	13,917	-

2) 세출

- 2020회계연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방역을 확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아동양육 및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은 국비 예산 1,718억 1천 9백만원과 시비 예산 76억 9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3,091,554	2,912,038	0	0	179,517	6.2
행정운영경비	763	763	0	0	-	0
재무활동	13,492	13,492	0	0	-	0
사업비	3,077,299	2,897,783	0	0	179,517	6.2

※ 총 5개 사업 증액 1,795억 1천 7백만원 (국비 1,718억 1천 9백만원, 시비 76억 9천 8백만원)

○ 대상사업은 증액사업 총 5건, 1,795억 1천 7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사업 (신규사업 포함)안은 다음과 같음.

- 가정양육수당 지원 (95억 5,982만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28억 5,000만원)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976만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 (1,663억 700만원, 신규)
- 아이돌봄 지원 (7억 8,000만원)

〈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x1,015,013) 2,912,038	(x171,819) 179,517	(x1,186,832) 3,091,554	6.2	5
여성정책담당관	(x9,449) 85,071	(x0) 0	(x9,449) 85,071	-	0
여성권익담당관	(x12,944) 40,587	(x0) 0	(x12,944) 40,587	-	0
보육담당관	(x610,373) 1,904,525	(x5,152) 12,410	(x615,525) 1,916,935	0.7	2
가족담당관	(x339,735) 688,011	(x166,307) 166,327	(x506,042) 854,338	24.2	2
아이돌봄담당관	(x38,710) 167,392	(x360) 780	(x39,070) 168,172	0.5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x3,773) 25,268	(x0) 0	(x3,773) 25,268	-	0
아동복지센터	(x28) 1,184	(x0) 0	(x28) 1,184	-	0

○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x1,015,013) 2,912,038	(x171,819) 179,517	(x1,186,832) 3,091,554	
	여성정책담당관	(x9,449) 85,071	(x0) 0	(x9,449) 85,071	
	여성권익담당관	(x12,944) 40,587	(x0) 0	(x12,944) 40,587	
	보육담당관	(x610,373) 1,904,525	(x5,152) 12,410	(x615,525) 1,916,935	
1	가정양육수당 지원	(x103,495) 192,041	(5,152) 9,560	(x108,647) 201,601	<p>〈국비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코로나19 관련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자격변동 증가 예상에 따라 증액
2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9,742	2,850	62,592	<p>〈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방역소독 지원
	가족담당관	(x339,735) 688,011	(x166,307) 166,327	(x506,042) 854,338	
3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372	20	1,392	<p>〈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비 지원(65개소)
4	아동양육 한시지원	-	(x166,307) 166,307	(x166,307) 166,307	<p>〈전액 국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원 (1인당 총40만원) (신규)
	아이돌봄담당관	(x38,710) 167,392	(x360) 780	(x39,070) 168,172	
5	아이돌봄 지원사업	(x18,845) 45,015	(x360) 780	(x19,205) 45,795	<p>〈국비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0~85% → 40~90%) 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x3,773) 25,268	(x0) 0	(x3,773) 25,268	
	아동복지센터	(x28) 1,184	(x0) 0	(x28) 1,184	

나. 복지정책실

1) 세입

- 세입은 4조 9,056억 3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2% 증가한 1,982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름. 국고보조금의 경우 3조 1,412억 6천만원에서 3조 3,394억 8천 3백만원으로 6.3% 증가하였음.

〈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4,232,108	4,905,603	4,707,380	198,223(4.2)
일반회계	2,780,251	3,405,384	3,207,161	198,223(6.2)
세외수입	경상적	13,851	14,005	-
	임시적	39,635	40,433	-
지방교부세	432	170	170	-
국고보조금 등	2,713,016	3,339,483	3,141,260	198,223(6.3)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13,318	11,293	11,29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7	1,500,219	1,500,219	-
세외수입	임시적	2,621	2,905	-
	국고보조금 등	678,572	752,308	-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770,664	745,006	745,006	-

2) 세출

- 2020회계연도 제1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심리가 확산되고,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복지정책실 소관 추경안은 국비 매칭 예산 1,982억 2천 3백만원과 시비 예산 2,337억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복지정책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8,137,075	7,705,151	0	0	431,924	3.9
행정운영경비	697	697	0	0	-	0
재무활동	945,211	745,211	0	0	200,000	26.8
사업비	7,191,167	6,959,243	0	0	231,924	4.3

※ 총10개 사업 증액 4,319억 2천 4백만원 (국비 1,982억 2천 3백만원, 시비 2,337억 1백만원)

- 대상사업은 증액사업 총 10건, 4,319억 2천 4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사업(신규사업 포함)안은 다음과 같음.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2천억원)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246억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1,712억원)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41억원)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시직숙 사업, 2억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205억원)
- 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4개사업 (12억 7천 1백만원)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x3,893,568) 7,705,151	(x198,223) 431,924	(x4,091,791) 8,137,075	5.6	10
복지정책과	(x1,350,542) 3,311,824	(x171,205) 371,205	(x1,521,747) 3,683,029	11.2	2
지역돌봄복지과	(x22,904) 262,553	(x12,693) 45,278	(x35,597) 307,831	17.2	3
어르신복지과	(x1,968,608) 2,585,269	(x0) 728	(x1,968,608) 2,585,997	0.03	1
인생이모작지원과	(x82,482) 320,781	(x14,325) 14,325	(x96,807) 335,106	4.5	2
장애인복지정책과	(x60,775) 269,946	(x0) 248	(x60,775) 270,194	0.1	1
장애인자립지원과	(x308,191) 752,739	(x0) 0	(x308,191) 752,739	-	0
자활지원과	(x100,066) 202,040	(x0) 140	(x100,066) 202,180	0.07	1

○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x3,893,568) 7,705,151	(x198,223) 431,924	(x4,091,791) 8,137,075	
복지정책과		(x1,350,542) 3,311,824	(x171,205) 371,205	(x1,521,747) 3,683,029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x0) 0	(x171,205) 171,205	(x171,205) 171,205	〈국비 매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역상품권 지급하여 저소득층 소득악화에 대응
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0	200,000	200,000	〈시비〉 ◦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 보충을 위해 전출금 편성
지역돌봄복지과		(x22,904) 262,553	(x12,693) 45,278	(x35,597) 307,831	
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4,514	155	94,669	〈시비〉 ◦ 종합사회복지관 방역비 지원
4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0	24,577	24,577	〈시비〉 ◦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등
5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관련 생활비 지원	(x636) 636	(x12,693) 20,546	(x13,329) 21,182	〈국비 매칭〉 ◦ 격리조치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입원·격리기간 생활비 지원
어르신복지과		(x1,968,608) 2,585,269	(x0) 728	(x1,968,608) 2,585,997	
6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0	728	728	〈시비〉 ◦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인생이모작지원과		(x82,482) 320,781	(x14,325) 14,325	(x96,807) 335,106	
7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x76,539) 165,839	(x14,123) 14,123	(x90,662) 179,963	〈전액 국비〉 ◦ 어르신일자리 참여자가 지역상품권으로 임금 수령 시 임금 20% 가산 지급
8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직속)	(x1,628) 5,425	(x202) 202	(x1,829) 5,626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장애인복지정책과	(x60,775) 269,946	(x0) 248	(x60,775) 270,194	
9	코로나19 대응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0	248	248	<시비> ◦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자활지원과	(x100,066) 202,040	(x0) 140	(x100,066) 202,180	
10	코로나19 대응 노숙인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0	140	140	<시비> ◦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

다. 시민건강국

1) 세입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984억 7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4억 6천 7백만원(1.3%)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280억 4천 1백만원에서 24억 6천 7백만원 증가(1.9%)한 1,305억 8백만원임.

〈표〉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예산	2020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190,340	198,407	195,940	2,467(1.3)	
세외 수입	경상적	40,795	40,791	40,791	0(0.0)
	임시적	20,831	25,111	25,111	0(0.0)
지방교부세	-	1,040	1,040	0(0.0)	
국고보조금 등	127,928	130,508	128,041	2,467(1.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6	957	957	0(0.0)	

2) 세출

-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970억 4천 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6천 7백만원(0.5%)이 증가되었으며 1개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표〉 시민건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497,047	494,580	0	0	2,467	0.5
행정운영경비	7,977	7,977	0	0	0	0
재무활동	435	435	0	0	0	0
사업비	488,635	486,168	0	0	2,467	0.5

※ 총 1개 사업(신규) 증 2,467백만원 (국비 2,467백만원)

〈표〉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x128,041) 494,580	(x2,467) 2,467	(x130,508) 497,048	0.5	1
보건의료정책과	(x14,678) 159,533	(x2,467) 2,467	(x17,145) 162,001	1.5	1
건강증진과	(x55,022) 145,665	-	(x55,022) 145,665	-	-
식품정책과	(x4,526) 12,324	-	(x4,526) 12,324	-	-
질병관리과	(x50,930) 120,091	-	(x50,930) 120,091	-	-
동물보호과	(x649) 6,138	-	(x649) 6,138	-	-
보건환경연구원	(x1,695) 21,597	-	(x1,695) 21,597	-	-
어린이병원	(x31) 9,616	-	(x31) 9,616	-	-
은평병원	(x172) 7,343	-	(x172) 7,343	-	-
서북병원	(x336) 12,272	-	(x336) 12,272	-	-

○ 대상사업은 증액사업 총 1건, 24억 6천 7백만원으로 추경(안)의 주요사업(신규 사업 포함)안은 다음과 같음.

- 보건소 구급차 지원 (24억 6천 7백만원)

〈표〉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x-) -	(x2,467) 2,467	(x2,467) 2,467	
	보건의료정책과	(x-) -	(x2,467) 2,467	(x2,467) 2,467	
1	보건소 구급차 지원	(x-) -	(x2,467) 2,467	(x2,467) 2,467	〈전액 국비〉 °보건소 구급차 지원

가. 여성가족정책실

1)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 추정안 개요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및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액보육료 지원, 영아반 운영비 지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597억 4,237만원으로, 추정안은 어린이집 방역소득비 28억 5,000만원을 추가(4.8% 증가)한 625억 9,237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62,592,370	(x-) 59,742,370	(x-) 2,850,000	
사무관리비	(x-) 31,100	(x-) 31,1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3,000	(x-) 13,000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62,548,270	(x-) 59,698,270	(x-) 2,8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방역소득 지원 - 5,700개소×50천원×10회

(2) 추경안 검토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Ⅲ판(2020.2.27.))에 따라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아래와 같이 매일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하는 경우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을 받아야함.

물품 및 장비*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업무 종료 후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수시

- 추경안 제출에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기금 19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한 바 있음.

구분	지원금액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비고
		영유아용	교직원용			
재난안전기금	1,900,000	880,000	108,000	456,000	456,000	▶ 2/7일 교부 ▶ 자치구 구매 후 배부 (자치구 재량)
중앙정부 목적 예비비 (국시비=5:5)	1,017,842	379,442		-	638,400	▶ 3월초 교부 ▶ 어린이집별 집행 후 정산 (원장 재량)

- 그러나 현재 휴원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와중에도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출근을 하여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상시 소독까지 이행하는 바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검토하건데 금번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700개소에 대한 방역비 편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린이집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수 있음.

○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¹⁾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2호²⁾, 같은법 시행규칙³⁾에 따라 어린이집(50인이상)은 등록된 소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5.7.7.>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독업자에게 연 5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이 아니라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소독으로 그 목적이 다른 바, 금번 추경에 따른 소독과는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추경안 개요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로서 가족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가족정책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을 목적으로 함.
- `20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13억 7,229만원으로, 추경안은 가족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 65개소에 대한 방역소독비 1,976만원을 증액(4.8% 증가)한 13억 9,20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392,052	(x-) 1,372,292	(x-) 19,760	
사무관리비	(x-) 22,760	(x-) 3,000	(x-) 19,760	○ 가족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 방역비(65개소) - 304,000원*65개소=19,760천원
민간위탁금	(x-) 1,369,292	(x-) 1,369,292	(x-) -	

(2) 추경안 검토

- 금번 가족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 65개소에 대한 방역비 편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설의 이용자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임.
- 추경안 제출에 앞서 서울시는 아동생활시설 및 가족 관련 시설 등 가족담당관 소관 사회복지시설 196개소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소독액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기금 2억 6,294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재난안전기금) 아동 및 가족 관련 시설 방역 물품 지원 내역

- 추진기간 : 2020.2월 ~ 계속
- 추진근거 : 서울시 안전총괄과-1555(2020.2.2.)
- 지원시설 : 196개소(시·구 건가센터, 한부모가족시설, 그룹홈, 아동생활시설 등)
- 지원물품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보급
 - 마스크(1회용) 110,000개, 손소독제 1,350개, 소독액 196개
 - 방역소독기 196개(24일부터 순차 배송)전
- 소요예산 : 262,946천원 (재난안전기금)

- 다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증가추세가 안정화되고 있지 않고, 향후 진행 추이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1회의 전문방역을 지원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금번 추경안에서 어린이집 당 10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점과 비교할 필요 있음. (검토보고서 20쪽 참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 산출내역 : 304천원 × 65개소 = 19,760천원
 - 전문방제 용역비 : 250천원(1회분:230천원+출장비 20천원)×65개소=16,250천원
 - 방역단가(한국방역협회 기준) : [(184천원/100㎡) + (273천원/1,000㎡)]×2 + 20천원(출장비)
 - 소독액 : 54천원(2회분/ 1ℓ/닥터크린) × 65개소 = 3,510천원

○ 또한, 수요 조사를 통해 방역 대상 시설로 선정된 전체 65개 시설 중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을 제외한 12개 아동학대 관련 시설은 사실상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사업에서 추정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업체와 일괄계약 추진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사유로 하나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편의주의적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표〉 방역 지원 대상 기관 수요조사 결과

시설명	개소수	수요조사 결과		미지원 사유
		방역 필요	방역 불필요	
총	196개소	65개소	131개소	
시·구 건가센터	26	26		
시립 한부모센터	1	1		
한부모 생활시설	26	26		
아동학대관련시설 (아보전8, 쉽터4)	12	12		
아동생활시설	44		44	· 생활시설 내 집단급식소는 법정 의무 소독 실시 기관(2~3개월 마다 1회 이상)으로 자체 소독 중 · 시행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설명	개소수	수요조사 결과		미지원 사유
		방역 필요	방역 불필요	
아동그룹홈	65		65	· 면적이 작은 일반 주택 형태로 소독방역기 사용 및 락스 청소 등을 통한 자체 소독
지역아동복지센터	18		18	· 생활시설 내 시설로 생활시설과 한꺼번에 소독하여 별도의 방역 불필요
가정위탁 등 기타시설	4		4	· 휴관 중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으며 자체 소독 실시

3)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규)

(1) 추경안 개요

-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지역사랑, 온누리 등)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정부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전액 국비 사업임.

- 금번 추경안은 국비 1,66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아동양육 한시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166,307,000) 166,307,000	(x-) 0	(x166,307,000) 166,307,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166,307,000) 166,307,000	(x-) 0	(x166,307,000) 166,307,000	○ 아동수당 - 415,768명×100,000원×4개월

(2) 추경안 검토

- 서울시는 금번 추경을 「① 민생안정지원 ② 피해업계지원 ③ 시민안전강화」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동 추경안은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양육 공백 등의 부담이 발생한 아동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간접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아동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구매가능품목 및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동 사업은 지급대상자를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현행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업대상 선별 등의 별도의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국회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4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에 아동양육가정의 소비여력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상품권인 서울사랑 상품권을 활용하여 종이 상품권보다 신속한 지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18개구만 상품권 발행을 시행하고 있는 바, 나머지 자치구에 거주하는 가정에는 집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이 외의 사업에 대하여

(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준

지원대상	일반아동			장애아동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86개월미만	36개월미만	86개월미만
지원금액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 금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1,920억 4,072만원 대비 95억 5,982만원 (5.0%) 늘어난 2,016억 5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추경의 사유는 두 가지인 바, 첫째는 '20년 본예산 확정 이후인 '20.1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1,915명분이 증액된 확정내시를 반영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난 정부추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우려 및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자격을 일시 전환하는 영유아의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4,302명분 2개월치를 편성한 증액분에 시비 매칭 비율(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에 맞춰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 코로나19 관련, 가정양육수당 국비 변경내시('20.3월) 반영
 - $24,302\text{명} \times 159,930\text{원} \times 2\text{월} \times 0.835 = 6,490,733\text{천원}$
- 가정양육수당 국비 확정내시('20.1월) 반영
 - $1,915\text{명} \times 159,93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0.835 = 3,069,089\text{천원}$
 - ※ 재원 분담 :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 다만 정부추경의 산출근거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참고한 것으로, 메르스 사태 때에는 2개월여 만에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⁴⁾ 금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의 경우는 현재 확진자 증가추세가 안정화되고 있지 않고, 향후 진행 추이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나 지원기간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바, 국비 변경내시를 통한 시비분 추가 편성이 요구될 수 있다 하겠음.

(2)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임.
- 금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450억 1,537만원 대비 7억 8,000만원(1.7%) 늘어난 457억 9,537만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비매칭(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하여 편성한 것임.

4) 2015년 메르스 사태 시작(2015.5.) 이후 2달이 경과한 2015.7.28. 일자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하였고, 2015.12.23. 일자로 메르스 상황이 종료된다고 밝혔음.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185명의 확진자 및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지원

- 정부지원 시간 확대(기존 720시간 → 720시간 초과 가능)
-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확대적용(기존 0%~85% → 40%~90%)
- 아이돌보미 대상 방역물품 지원 허용

- 추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유 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인)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기 존	개 선	기 존	개 선	증감 (시간당)
가 형	75% 이하 (356.2만원 이하)	8,407원 (85%)	8,901원 (90%)	1,483원 (15%)	989원 (10%)	△494원
나 형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5,440원 (55%)	5,934원 (60%)	4,450원 (45%)	3,956원 (40%)	△494원
다 형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1,484원 (15%)	4,945원 (50%)	8,406원 (85%)	4,945원 (50%)	△3,461원
라 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원 (40%)	9,890원 (100%)	5,934원 (60%)	△3,956원

- 다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원 확대 대상이 3월2일~3월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이라고 하겠음.
- 그러나 어린이집의 휴원·휴교가 4월 5일까지 2주 재연장되는 등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경우는 현재 확진자 증가추세가 안정화되고 있지 않고, 향후 진행 추이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가정양육수당과 마

찬가지로 지원대상이나 기간이 늘어나 국비 변경내시를 통한 시비분 추가 편성이 요구될 수 있다 하겠음.

나. 복지정책실

1)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

(1) 사업 및 추경 개요

- 사회 전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회기조이나, 한편으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축소되는 등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행한 경제동향 3월호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4.2%에서 96.9%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조사가 2월 중순에 실시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월 중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경기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뿐만 아니라 과거 메르스 사태가 정점에 있던 2015년 6월의 경우 일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13.6만명('15.5월)에서 4.7만 명('15.6월)으로 크게 축소된 바로 미루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업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경제 전반이 악화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수반되는 이번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2015년 서울시에서는 메르스 위기극복을 위해 8,9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173억 3천만원을 투입해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유가족, 병원·자가·시설 격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음.

〈표〉 서울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메르스 피해 현황 비교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3.18.기준)	270명	0명
메르스* (2015.10.26.기준)	52명	9명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백서 (2015)

〈표〉 메르스 관련 서울시 예산투입

(‘15.8.25 기준/단위 : 백만원)

총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소계	1차	2차	소계	1차	2차		
17,338	8,752	6,638	2,114	5,486	3,686	1,800	2,700	400

출처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백서 (2015)

- 2015년 메르스 당시, 복지정책실에서는 긴급 생계비로 6,382명에게 51억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서울형 긴급복지로는 4,079가구에 3억 7,7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지원하고, 168가구에 5,9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음. 5)
- 금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감염이 비정규직·여성·돌봄 노동종사자 등이 주로 근무하는 콜센터, 요양병원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약계층은 이러한 사회재난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
-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사태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나 현재 근로계약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일부 공적제도의 대상자들만이 지원을 받고 있음.
-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은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임.

〈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서울시비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산출내역 및 예산금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200,000,000 천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 단기근로 인력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조 등 24,576,940천원

-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으

5)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 (2016), 서울특별시

로 2천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침체로 인해 사회재난에 준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이 활기를 잃게 되면서 일자리의 감소, 시민들의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 이번 예산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특수한 현상을 반영한 의미있는 예산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추경안 검토

① 사전 사업 추진과정

- 가장 먼저, 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 관련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사전 추진과정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복지정책실에서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 사업의 근거로 삼고,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생활기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임.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로 저소득주민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대상가구가 중위

소득 100%이하(1,177천 가구)로 그 대상이 크게 확장되면서 본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기존 복지제도의 법적근거 및 대상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중위소득30%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40%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전라남도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근거로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이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사업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중위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과거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음. 이는 전국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서울시와 같은 도시 생활 가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같은 소득에 비해 생활물가가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전국 기준의 중위소득을 서울시민에게 적용하는 적합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 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다른 저소득 지원사업이 소득조사와 함께 금융재산 조사도 함께 실시하는 데 비해, 특수한 현 사태를 반영해 일반 및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여타 지원사업과 차별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표〉 가구별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중위소득 85%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기금 가운데 복지정책실 소관인 구호계정을 사용할 예정에 있는 바, 재난기금 사용에 있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관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므로 기금사용에 있어 해당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전협의 이행이 선결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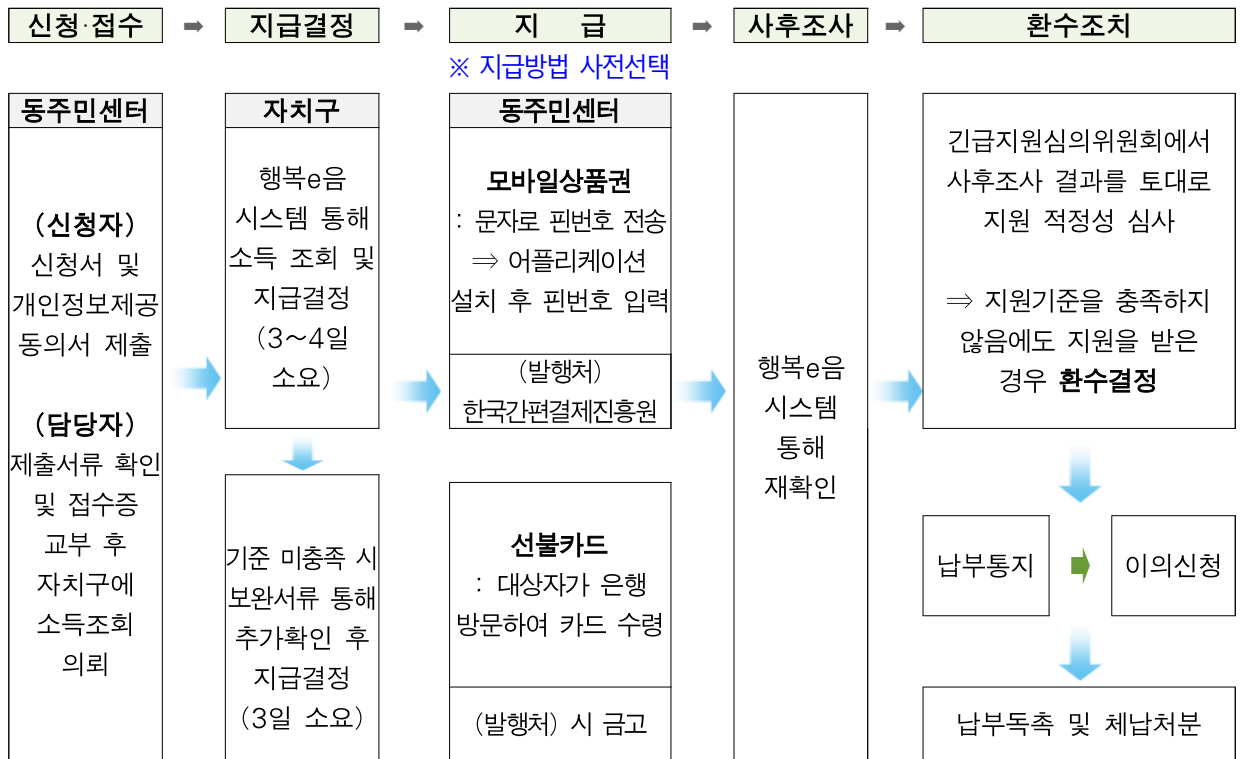
- 복지정책과의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2020년 3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여파 등의 사유로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해석해 협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반려한 바 있음.
- 다만,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협의대상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② 사업설계와 추진과정

- 현재 사업의 대상추계 과정에서 서울시 전체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총 1,915천 가구 중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하고 있음.
- 현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원수 별 가구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추계를 위한 원 자료(raw data)의 확보도 쉽지 않음.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서울시 차원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별 실태조사를 실행해 향

후 유사한 사업에 추계 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이 설정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 현장에서 행복e음 입력 등 관련 업무로 인해 업무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면서 해당 작업을 위한 단기 기간제 근로 인력지원비가 편성되어 있음.
- 이 단기 기간제 근로인력은 행복e음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으므로 단순 신청·접수 단계에서의 지원업무를 맡게 되는데 단순히 해당업무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 별로 2명의 인력과 본청 지원인력 1인을 파견하는 데에 대한 적합성이 우려되며, 사업 지원체계에서 본다면 신청·접수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특성상 신속하게 지급되는 만큼 사후조사와 환수조치도 동반되는데, 오히려 이 단계에서 더욱 인력이 필요할 것은 아닌지 고용기간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지원체계

- 또한 사업의 특성상 신속성이 중요한만큼 임시인력 채용과정과 투입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해 지급기준 및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행정비용문제를 들 수 있음.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선정기준액을 적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구(만 6세미만 아동)에만 지급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대상자 모두에게 수당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 2019년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이(생후 84개월 미만)'에게 주는 것으로 바뀐 사례가 있음.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에서 제외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1,626억원이 소요되

는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할 때 소요되는 1,588억과 맞먹는 금액이 소요된 것임. 이처럼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 수준, 직업군 등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 등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⁶⁾

-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웠던 가구도 재난과 동시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실제 피해 가구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적정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존재함.⁷⁾
- 본 사업은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까지로 설정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긴 하나,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업급여, 기타 정부지원금 등 공적급여의 수급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역시 우려됨.
- 지급방식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의 두 가지 방식을 들고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일종의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의 추가개정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소결

- 현재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피해

6) 배재현·박영원.(2020).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1674호,국회입법조사처

7) 강신욱(2014), 재난발생시 취약계층 사회보장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간 자료

를 재난사태로 인식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으나,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은 소득을 바탕으로 ‘선별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사업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중위소득 100%로 그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늘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사회보장제도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중앙정부의 민생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까지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재난 상황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은 생계에도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본 사업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완화시켜 시민들에게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 서울시의 시도가 담긴 의미있는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그 추진방법과 사업설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다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즉시 보완해가며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 추경안 개요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자치구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141억 2천 3백만원을 증액(8.5%)한 1,799억 5천 7백만원 이, 시직속사업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백만원 증액(3.7%)한 56억 2천 6백만원이 제출되었음.

〈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국 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90,662,320) 179,957,703	(x76,538,900) 165,834,283	(x14,123,420) 14,123,420	○ 어르신일자리 쿠폰 - 59,845명(공익활동 일자리 참여 어르 신)*4개월*59,000원 = 14,123,420천원
	사무관리비	(x-) 5,000	(x-) 5,000	(x-) -	
시 직 속	사회복지 사업보조	(x1,829,380) 5,626,414	(x1,627,600) 5,424,634	(x201,780) 201,780	○ 어르신일자리 쿠폰 - 855명(공익활동 일자리 참여 어르 신)*4개월*59,000원 = 201,780천원

(2) 추경안 검토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의 사회참여지원) 및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는 경우 총 보수의 20%를 추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담고 있음. 이에 현금만 수령하는 경우 27만원이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32만 9천원을 수령할 수 있음.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공익활동형⁸)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① 현금만 수령 (27만원)	27만원		
② 현금·바우처 수령(32.9만원)	18.9만원 (70%)	8.1만원 (30%)	5.9만원 (20%)

※(현재) 월27만원→(개정) 현금18.9 + 상품권14.0(8.1(지역상품권)+5.9(지역사랑상품권))만원 = 32.9만원

(3) 소 결

- 동 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노인층의 노인 대상 일자리가 축소되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가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적 성격을 가진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하고자 제안되었음. 다만, 정부차원에서 지급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인센티브의 경우 전액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바 서울시가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서울시의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3) 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신규)

(1) 추경안 개요

-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8) 공익활동형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노노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원기준은 월 27만원*11개월

-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3~4개월간 방역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시비로 총 12억 7,099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방역비 관련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4,561	93,290	1,27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3,445	93,290	155	◦ 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
사회복지사업보조	27	0	2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94	0	694	◦ 노인 복지시설 등 방역비 지원 - 양로·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승화원, 추모공원 등 1,027개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	0	7	
사무관리비	248	0	248	◦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주단기시설 등 627개소
민간위탁금	61	0	61	
사회복지사업보조	43	0	43	◦ 노숙인 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 쪽방·노숙인 시설 3,159개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	0	36	

(2) 추경안 검토

① 추경안의 발생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3.19) 기준 누적 확진자 8,565명 중 80.8%가 신천지를 포함한 집단감염⁹⁾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건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브리핑을 통해(2020.3.9.) 기저 질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고령자가 모여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코

9) 확진환자 발생 유형별 비율(3.19 기준)

- 신천지 관련 : 58.7%, 기타 집단발생 : 22.1%, 산발적 발생 : 19.2%(출처:http://ncov.mohw.go.kr/)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중요¹⁰⁾하다고 강조하였음,

- 밀폐된 닫힌 공간에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전파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가진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복지정책실의 소관시설 이용자의 경우 어르신, 장애인 등 기저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감염을 예방·차단할 수 있는 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② 추경안의 세부내역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4,911개소를 대상으로 12억 7,099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시설면적에 따른 1회 방제용역비를 기준으로 월1회씩 3개월간 실시하는 안으로 시설 유형별 산출내역은 붙임과 같음.

※방역비 산출근거 : 기준면적(단위) 단가 × 4,911개소 × 월1회 × 3회

- 산출내역의 방역단가 책정기준은 1,500㎡이상은 50만원, 1,500㎡미만은 40만원의 단가로 그 외 기타 소규모 시설의 경우 10~20만원의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 집행부에서는 산출단가는 시설별 면적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르다는 어려움

10) '지역사회 전파 차단·해외 추가유입 억제 투트랙으로' (2020.3.9. 코로나 정례브리핑 중)
"당분간 전세계적 확산 이어질 것...유증상자 검역 강화방안 검토"
"국내 80%는 집단발생...의료기관·복지시설 등 유입차단 중요"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116551017>

이 존재하여 대략적인 평균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일률적 기준보다 시설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표〉 방역비 지원 복지시설 세부 현황 및 산출내역

담당부서	시설유형	개소수	산출내역
계		4,911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미만시설 : 400천원×13개소×월1회×3개월=15,600천원 ◦ 1,500㎡~2,500㎡ 시설 : 500천원×46개소×월1회×3개월=69,000천원 ◦ 2,500㎡이상 시설 : 600천원×39개소×월1회×3개월=70,200천원
어르신 복지과	양로시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 5개소×500천원×3회(월1회)=7,500천원 ◦ 무료 : 7개소×500천원×3회(월1회)=10,500천원 ◦ 공동생활가정 : 3개소×100천원×3회(월1회)=900천원
	요양시설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 법인 : 198개소×500천원×3회(월1회)=297,000천원 ◦ 시립, 병설 : 11개소×500천원×3회(월1회)=16,500천원 ◦ 공동생활가정 : 307개소×100천원×3회(월1회)=92,100천원
	데이케어센터	494	◦ 494개소×200천원×3회(월1회)=296,400천원
	승화원	1	◦ 483천원×4회(월1회)=1,932천원
	추모공원	1	◦ 1,225천원×4회(월1회)=4,900천원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45	◦ 300천원×45개소×3회(월1회)=40,500천원
	주간, 단기시설	168	◦ 120천원×168개소×3회(월1회)=60,480천원
	공동, 자립주택	255	◦ 100천원×255개소×3회(월1회)=76,500천원
	직업재활시설	135	◦ 134천원×135개소×3회(월1회)=54,270천원
	평생교육센터	17	◦ 200천원×17개소×3회(월1회)=10,200천원
	보조기기센터	4	◦ 300천원×4개소×3회(월1회)=3,600천원
	일자리통합	1	◦ 300천원×1개소×3회(월1회)=900천원
	커리어플러스	1	◦ 300천원×1개소×3회(월1회)=900천원
생산물판매시설	1	◦ 314천원×1개소×3회(월1회)=942천원	
자활지원과	쪽방, 노숙인시설	3,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중코로나 19 감염에 대비한 노숙인 시설 방역비용 지원=42,900천원 - 대규모 시설일시 : 4개소× 500,000원× 월회× 3개월 = 6,000천원 - 대규모 시설자활 : 3개소× 500,000원× 월회× 3개월 = 4,500천원 ※ 일시보호시설 등 대규모 시설 1,500㎡ 이상 단가 500,000원 - 소규모 시설자활 : 16개소×400,000원×월회×3개월=19,200천원 - 소규모 시설자활 : 7개소×400,000원×월회×3개월=8,400천원 - 소규모 시설요양 : 3개소×400,000원×월회×3개월=3,600천원 - 소규모 시설광역 : 1개소×400,000원×월회×3개월=1,200천원 ※ 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중 소규모 시설 1,500㎡ 미만 단가 400,000원

담당부서	시설유형	개소수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 19 감염에 대비한 노숙인 시설 방역비용 지원=36,000천원 - 지역자활센터 : 30개소 × 400,000원 × 월회 × 3개월 = 36,000천원 ※ 지역자활센터 등 소규모 시설 1,500㎡ 미만 단가 400,000원 ◦ 신종코로나 19 감염에 대비한 노숙인 시설 방역비용 지원=61,275천원 - 쪽방 : 3,085개소 × 5,000원 × 월회 × 3개월 = 46,275천원 ※ 쪽방 1개소 당 면적 5.18㎡으로 단가 5,000원 산정 - 대규모 시설종합 : 6개소 × 500,000원 × 월회 × 3개월 = 9,000천원 - 대규모 시설자활 : 2개소 × 500,000원 × 월회 × 3개월 = 3,000천원 - 대규모 시설재활 : 1개소 × 500,000원 × 월회 × 3개월 = 1,500천원 - 대규모 시설요양 : 1개소 × 500,000원 × 월회 × 3개월 = 1,500천원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 대규모 시설 1,500㎡ 이상 단가 500,000원

○ 이 외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중 인생이모작지원과 시설 3,551개소, 장애인 자립지원과 소관시설 63개소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방역비 확보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표〉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방역비 지원 내용

(단위:천원)

부서명	개소수	예산	대상시설유형
계	3,614	821,200	
장애인자립지원과	63개소	6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50개소 : 500천원×50개소×월1회×2개월 ◦ 의료재활센터 6개소 : 500천원×6개소×월1회×2개월 ◦ 체육시설 7개소 : 500천원×7개소×월1회×2개월 ※ 방역단기는 시설별 면적 세부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2,500㎡이상시설 기준 일괄 적용(500,000원)
인생이모작지원과	3551개소	758,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종합복지과 36개소 : 500천원×36개소×월1회×2개월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8개소 : 300천원×48개소×월1회×2개월 ◦ 경로당 3467개소 : 100천원×3467개소×월1회×2개월

(3) 소결

- 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사업을 위한 추경안은 집단시설 관리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인 바, 예산 편성의 편성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또한 누적 확진자의 대부분이(3.19기준 80.8%) 집단감염¹¹⁾으로 나타나고 있고 밀폐된 닫힌 공간에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전파 가능성이 증가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다수가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방역비 지원을 통해 감염 전파경로를 차단하여 시설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11) 확진환자 발생 유형별 비율(3.19 기준)

- 신천지 관련 : 58.7%, 기타 집단발생 : 22.1%, 산발적 발생 : 19.2%(출처:<http://ncov.mohw.go.kr/>)

다. 시민건강국

1)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

(1) 추경안 개요

- 동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와 관련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소 환자 및 검체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 증차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전액 국비지원으로 총 2,467,300천원 편성되었음.

〈표〉 보건소 자치단체 자본보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x2,467,300) 2,467,300	(x-) -	(x2,467,300) 2,467,300	○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매 지원 - 200,000,000원*12대 = 2,400,000천원 ○ 보건소 일반구급차 구매 지원 - 67,300,000원* 1대 = 67,300천원

(2) 추경안 검토

① 추경안의 발생 배경

- 동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와 관련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음압장비가 탑재된 음압특수 구급차 및 일반구급차를 보건소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감염병의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보건소 구급차 구매 산출 내역>

○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매 지원	
- 200,000,000원*12대 =	2,400,000천원
○ 보건소 일반구급차 구매 지원	
- 67,300,000원*1대 =	67,300천원

② 응급의료 구급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¹²⁾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¹³⁾에 따른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 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일반 구급차로 구분하고 있음.
 - 음압특수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특수 구급차의 일종으로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획하여 완전 밀폐하고 별도의 공조기와 방역장비를 탑재함으로써 감염병(의심)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장비임.

12)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3)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 구급차 유형〉

구 분	일반 구급차	특수 구급차	음압특수 구급차
사진			
이송대상 (법적근거)	위급의 정도가 낮은 응급환자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특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석 격벽(구획칸막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석 격벽(구획칸막이) 있으나 공기는 순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압설비 및 운전석과 환자 실 구획·완전밀폐 - 감염병(의심)환자의 안전한 이송

자료 : 보건복지부

③ 신종감염병 대응시 구급차의 활용

- 신종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해외유입방지와 조기진단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있음.¹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기관별 임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14) 나백주, 김동현(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중심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선진화 방안.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8(8), 700-705. 지역사회 건강증진협력 모색,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0권(4호), 78

〈감염병 관리 대응 기관별 임무〉

관련기관	역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대규모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지원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 실험실 검사 관리(기관 확대, 질관리 등)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 전국 모든 시·도 환자관리반 운영(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 ○ 지역 환자 감시체계 운영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해제 등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 지역 내 격리병상, 격리시설 관리 및 추가 확보계획 마련 ○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 개편 및 검사인력 보강
보건환경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코로나19 병원체 실험실 검사
감염병관리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코로나19 감시·역학조사·자료분석 등 기술지원 ○ 시·도 단위 지역별 맞춤형 코로나19 관리 기술지원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 코로나19 신고·보고(발생, 사망, 퇴원) ○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 코로나19 호나자 선별진료소 운영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7-3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의사환자의 조치 시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의사환자의 조치〉

1) (최초 인지 보건소) 의사환자의 이송 :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①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 ②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타인과 접촉 최소화)
- ③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KF94 등급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이동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7-3판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반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이송으로 구급차 운전자와 응급구조사가 메르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운전원 및 의료인들의 감염 방지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건소의 음압특수 구급차 배치는 이송요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대응 강화로 적절함.
- 응급의료통계연보의 서울시 서울시의 구급차 배치 현황¹⁵⁾을 보면, 특수 구급차 359개, 일반 구급차 471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 구급차의 경우 119 구급대와 민간이송업체에서 각각 150대와 141대를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는 구급차 보유 현황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 요청시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5) 응급의료통계연보 현황, 2018

〈서울시 구급차 및 배치된 의료인력 현황〉

2018.12.31.(단위: 대, 명)

구분	구급차			인력			
	계	특수1)	일반2)	계	1급 응급구조 사	2급 응급구조 사	의사/ 간호사
계	830	359	471	2,234	807	535	89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5	25	20	101	-	-	101
보건의료원	1	-	1	4	-	-	4
보건소	39	25	14	97	-	-	97
지자체	5	-	5	-	-	-	-
응급의료기관	66	26	40	225	112	-	113
권역응급의료센터	8	6	2	39	28	-	11
지역응급의료센터	35	13	22	132	66	-	66
지역응급의료기관	23	7	16	54	18	-	36
응급의료기관 외	274	8	266	464	22	3	439
기타응급실	19	3	16	52	8	-	44
병원	245	3	242	395	12	2	381
의원	10	2	8	17	2	1	14
기타시설	6	4	2	23	10	8	5
산업체	4	2	2	16	5	7	4
공항(공항공사 및 공항)	2	2	-	7	5	1	1
119구급대	150	150	-	1,170	558	445	167
군3)	38	4	34	-	-	-	-
경찰(교도소포함)	1	-	1	1	-	-	1
민간이송업체	249	141	108	249	105	78	66
비영리법인이송업체	1	1	-	1	-	1	-

주: 시·도 및 소방청, 국방부에서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함. 인력은 구급차 출동 시 탑승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 또는 실제 탑승 인력임

- 1) 특수구급차란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를 의미함
- 2) 일반구급차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를 의미함
- 3) 특수: 군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구급차, 일반: 군 이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구급차

(3) 소결

-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와 이동 조치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압특수 구급차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상황을 대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 응급의료체계 강화의 필수적 요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구급차의 보유 현황 및 활용계획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으로 향후 보건소의 구급차에 대한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통해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며, 주기적인 기관별 보유 현황 파악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교차 활용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WHO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Pandemic 선언을 통해 전세계적인 공중보건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한국은 지난 MERS 사태를 돌아볼 때 감염병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음. 이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의 취약성 외에도 사회경제적인 파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각 학계, 언론, 시민의 평가임.
- 이에 살펴보면 ‘2020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법정 의무 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거나, 시비로 어린이집이나 아동·가족 관련 시설에 방역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추경 사유에 대한 그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금회 추경의 원인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추이가 아직까지 명확히 예측할 수 없이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이나 횟수 등이 충분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음.
- 또한 긴급하게 이루어진 추경안인 만큼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집행의 효율성을 우선하여 다소 행정 편의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 등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임.
- 복지정책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는 지난 MERS 사태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음. 2015년 발생한 MERS 사태는 우리 사회의 방역체계를 되돌아보게 하였음.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이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을 통제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나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대유행이 종식된 이후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실정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이 받는 피해는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이미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 있거나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의 상실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비가 매칭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국비우선편성원칙에 따라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매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규로 편성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절차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추정안이라는 이유로 일부 미진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재난상황에서 재난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으로 표현되는 상태를 겪었음. 이는 같은 재난을 겪더라도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재난의 피해결과는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결과에 따라 피해 정도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조건이 제시되고, 불평등한 조건은 위험에 많이 노출시키며 재난에서의 회복 또한 느리게 만든다는 것임.¹⁶⁾
- 따라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고려가 재난 상황에서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점,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16) 고동현(2015). 사회적 재난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정부 실패와 위험 불평등. 『한국사회정책』. 22(1): 83-119.

라도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인 재난구호성격의 정책과 예산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선행적인 근거가 거의 없음. 이로 인해 재난시 긴급생활비지원 사업성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큰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의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성과보다는 당위성을 그 논리적 근거로 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대상자 선정 방식과 대상의 적절성, 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적절성, 성과예측이 어려운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